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516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우동형, 양태정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윤희, 나광엽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이남철

변론 종결2024. 11. 20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, 이 사건 부동산)에 관하여, 피고와 C(이하, 소외인) 사이에 2022. 5. 10. 체결된 매매예약(이하, 이 사건 매매예약)을 취소하고, 피고는 소외인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22. 6. 9. 접수 제1995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(이하, 이 사건 가등기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소외인이 2022. 6. 9.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원고는, 소외인이 당시 유일하게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4다43909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, 원고가 2023. 3. 15.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결정을 받아(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카단10182) 집행한 사실, 그 후 2023. 4. 12.부터 2023. 9. 21.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6건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노연주

별지